

무배당 Chubb 다이렉트 밝은눈 얼굴보험1904 1종 상품요약서

1. 문답식 상품해설

- Q. 이 상품의 특정보장의 보장개시일은?
- A. 「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(각막혼탁·각막확장) 및 재수술보장」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이후에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, 이후 합병증(각막혼탁·각막확장)이 발생하거나 재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. 또한, 「안경파손비용보장」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- Q. 해지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?
- A.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,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2.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

- (1) 가입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
- ① 가입연령: 20세~39세
 - ② 피보험자의 범위: 피보험자는 청약일 현재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자로 합니다.
 - ③ 가입제한사항 : 피보험자의 직업, 직무,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,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
- (2) 상품의 특이사항
- ① 적용이율 : 2.0%(연복리)
 - ②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,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

구분		가입나이	보험기간	보험료 납입기간	보험료 납입주기
기본계약	얼굴안심보장 I 및 만기환급금 10만원	20~39세	3년만기	전기납	월납 연납
	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(각막혼탁·각막확장) 및 재수술보장				
	안경파손비용보장				

- ③ 만기환급금 :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10만원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. 다만,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및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

3. 보험금 지급사유,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

(1)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

- 얼굴안심보장 I

(가입금액 100만원 기준)

보장명	지급사유	지급금액				
외모특정상해수술 (동일사고당 1회한)	외모특정상해로 수술시	100만원				
중대한특정상해수술 (동일사고당 1회한)	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·개흉·개복수술을 받은 경우	500만원				
두개골/안면골 골절진단	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(치아파절 제외)로 진단확정된 경우	50만원				
외모특정화상진단	외모특정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	50만원				
상해흉터복원수술	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/추상장애, 신체의 기형/기능장애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안면부</td> <td>수술 1cm당 14만원</td> </tr> <tr> <td>상지/하지</td> <td>수술 1cm당 7만원 (단,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)</td> </tr> </table> <p>1사고당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, 길이측정이 불가능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함</p>	안면부	수술 1cm당 14만원	상지/하지	수술 1cm당 7만원 (단,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)
안면부	수술 1cm당 14만원					
상지/하지	수술 1cm당 7만원 (단,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)					

-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(각막혼탁·각막확장) 및 재수술보장

(가입금액 30만원 기준)

보장명	지급사유	지급금액
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(각막혼탁·각막확장)보장 보험금	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일 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이후에 굴절이상(근시, 원시, 난시)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'레이저시력교정수술'을 받고, '레이저시력교정수술해당일' 이후에 '합병증(각막혼탁·각막확장)'으로 진단확정된 경우	발생 안구당 30만원
레이저시력교정수술 재수술보장보험금	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일 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이후에 굴절이상(근시, 원시, 난시)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'레이저시력교정수술'을 받고, '레이저시력교정수술해당일' 이후에 '재수술'을 받은 경우	수술 안구당 30만원

- 안경파손비용보장

(가입금액 10만원 기준)

보장명	지급사유	지급금액				
안경파손비용	안경파손을 원인으로 사용 중이던 안경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(연간 1회한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계약일부터 1년미만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계약일부터 1년이상</td> <td>안경파손비용의 80% (10만원 한도)</td> </tr> </table>	계약일부터 1년미만	-	계약일부터 1년이상	안경파손비용의 80% (10만원 한도)
계약일부터 1년미만	-					
계약일부터 1년이상	안경파손비용의 80% (10만원 한도)					

(2)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

-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. 단,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②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(각막혼탁·각막확장) 및 레이저시력교정수술 재수술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 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이후에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, 이후 합병증(각막혼탁·각막확장)이 발생하거나 재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.
- ③ 안경파손비용은 계약일 부터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.
- ④ 안경파손비용의 경우 보험목적인 안경에 약관에서 정한 「안경파손」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.
 - 손해가 발생된 보험목적의 시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
 - 손해가 발생된 보험목적의 수선하게 될 때에는 보험목적의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수선비를 손해액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
- ⑤ 안경파손비용의 경우 안경테나 안경렌즈 중 어느 하나의 품목만 파손된 경우라도 안경파손비용을 지급합니다. 다만, 이 경우 안경파손비용은 품목에 관계없이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.
- ⑥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(고지사항)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- ⑦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,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

(1) 보험료의 구성

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,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,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.

(2) 적용이율

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.0%입니다.

적용이율이란?

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 하게 됩니다.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, 이러한 할인을 “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”이라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,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,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.

(3) 적용위험률

적용위험률이란?

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.

보장위험	적용위험률<남/여 30세 기준>	
	남자	여자
외모특정상해수술	0.000863	0.000283
중대한특정상해수술	0.000360	0.000204
두개골/안면골골절	0.00176	0.00176

(4)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

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?

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,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.

5. 보험가격지수

보험가격지수 산출식 : “영업보험료 ÷ (참조순보험료+상품군별 평균사업비)×100”

보험가격지수란?

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(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)을 참조순보험료총액*과 평균사업비총액**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“보험가격지수”라고 합니다.

*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

**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(역산)한 값

<30세, 3년만기, 전기납 기준>

남 자	여 자
120.3%	120.4%

6.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

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,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

7.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

(1) 해지환급금 산출기준

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.

(2) 해지환급금

- 가입기준 : 남자 30세, 월납 7,600원, 3년만기, 3년납
- 보통약관 : 【얼굴안심보장 I 및 만기환급금 10만원】 가입금액 100만원
【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(각막혼탁·각막확장) 및 재수술보장】 가입금액 30만원
【안경파손비용보장】 가입금액 10만원

경과기간	납입보험료(원)	해지환급금(원)	해지환급률(%)
1년	91,200	21,794	23.9%
2년	182,400	60,639	33.2%
3년	273,600	100,000	36.5%

(3)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

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,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,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,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등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